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 상 원 의원)

의 안 번 호	26-9
------------	------

발의년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이상원, 강동오, 채우진,
권인순, 이한동, 안미자,
권영숙 의원(7인)

1. 제정이유

마포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류봉제, 인쇄 등 노동집약적 도시제조업)은 영세한 사업 구조, 종사자 고령화, 기술 전승 단절,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산업 지속 가능성의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특히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만으로는 도시제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술 유지·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력양성, 기술혁신, 디지털화, 공동사업, 집적지구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경영지원,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안 제4조, 제10조)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위해요인 진단, 설비·장비 개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숙련기술 기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처우개선, 청년 인력 유입,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기술 전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8조 및 제9조)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상담·정보 제공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공동사업 및 집적지구 지원 강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공동시설·장비, 공동판로, 공동브랜드 등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집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의: 경제진흥과(경제총괄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1. 9. ~ 1.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등 도시제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디지털화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
2.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
5. 기업, 교육기관, 관계 기관 등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 · 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전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 ·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 · 상담 등 지원 사업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구인 · 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위해요인 진단·컨설팅 지원
2.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장비 개선·교체 지원
3.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도시형소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지원 사업
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4.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5.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2. 사업장 건물 및 시설의 개량·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개량
4. 이동약자 편의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이하 생략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 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 · 가스 · 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 의 설치 · 개량
 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 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 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 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③ 이하 생략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 · 한도 및 절차) ① 생략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 · 시설 · 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 · 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장비의 보수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2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④ 이하 생략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5. 이하 생략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 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⑤ 이하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생략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관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시 비용 소요

나. 관련조문

- 제4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7조(기술전수 지원),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3조(집적지구 금융지원), 제14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김주희
연락처	02-3153-8572